

교기.휘장 규정

□ 제정 : 1999. 10. 1.

□ 개정 : 2011. 6.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창학이념의 정신을 드높이고 본교의 애교심을 함양함과 동시에 본교의 무궁한 발전과 창조적인 정신을 상징하는데 필요한 교기와 휘장을 정하며, 이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① 본교의 휘장(별표)은 교명인 수원과학대학교(SUWON SCIENCE COLLEGE), 본교의 로고를 사용한다.

② 교색은 남색을 사용한다.

제3조(용도) 이 휘장은 본교를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각종 상패와 연단 및 각종 인쇄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 기

제4조(종류) 교기는 정기와 약기로 나누어 쓰며 정기(별표 2)는 이 규정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하며 응원기와 같은 약기는 필요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제작 상용할 수 있다.

제5조(기면) ① 교기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형기, 중형기, 소형기로 나누어 쓸 수 있으나 크기의 비율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한다.

1. 대형기는 가로 270cm와 세로 180cm, 가로 210cm와 세로 140cm의 두 가지로 함.

2. 중형기는 가로 150cm와 세로 100cm, 가로 120cm 세로 80cm의 두 가지로 함.

3. 소형기는 가로 45cm와 세로 30cm, 가로 30cm와 세로 20cm의 두 가지로 함.

② 본교 교기는 휘장 하단에 "수원과학대학교"이라고 백색 한글로 가로로 쓰되 가로 좌측 30분의 7자리에서 시작하여 쓰며 한글자의 간격은 15분의 1씩 띄어쓴다. 세로의 위치는 10분의 1에서 10분의 2까지를 폭으로 한다.

③ 각 학과 또는 부설.부속기관의 기는 교기에 따르되 "수원과학대학교"의 글자 위치에 각 학과, 부속 또는 부설기관의 명칭을 표시하여 각각 고유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게양) ① 교기 하나만 게양할 경우에는 정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태극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약간 높게 단다.

4-2-3 교기휘장 규정

- ③ 태극기와 외국 국기(기타 게양기 포함)를 쓰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약간 높게 가운데 두고 왼편에 외국기를 달고 오른편에 교기 정기를 같은 높이로 게양한다.
- ④ 태극기와 외국기를 2개 이상 게양할 경우에 게양시설이 3개 밖에 없을 때에는 교기 위치에 두 번째 외국기를 달고 교기는 게양치 아니한다.
- ⑤ 국가나 학내 행사로 반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깃봉에서 교기의 폭만큼 내려서 단다.
- ⑥ 벽면에 다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게양시기) ① 교기는 일출 이후에 게양하고 일몰시에 내리며, 그 시간은 계절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교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뺏 지

제8조(패용 목적) 뺏지는 본교의 상징적인 표상으로서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수원 과학대학인의 긍지를 지니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한다는 뜻에서 뺏지를 단다.

제9조(규격) 뺏지의 규격 및 디자인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부착위치) 뺏지는 왼쪽 가슴위에 단다. 그러나 정장을 하였을 때에는 옷의 외편 깃에 단다.

제11조(제작 및 교부) 모든 뺏지는 총무과에서 제작하여 교부한다.

제12조(부착기간) 뺏지는 재학 및 재직중에만 부착하고, 졸업, 제적, 퇴학한 학생이나 퇴직한 교직원은 부착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